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657

발의연월일: 2024. 8. 8.

발 의 자:김승원·서영교·이건태

김정호 • 김용민 • 이성윤

전혐희 · 장경태 · 박지워

박균택 · 김병주 · 한준호

김민석 · 임호선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2023년 압수·수색영장은 총 498,482회 청구되어 총 455,485회 발부되었음. 이처럼 형사절차에서 압수·수색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 며, 특히 최근에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·수색이 증가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압수·수색영장의 발부 전에 법원이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고,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·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만을 두도록 하고 있을 뿐 압수 대상이 될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한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. 이 때문에 수사에 있어 수사기관의 압수·수색이 필요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법원이 압수·수색영장의 발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, 전자정보의 압수·수색영장

에는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압수·수색에서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09조의2 등). 법률 제 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9조의2(압수·수색의 심리)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·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.

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압수·수색할 물건이 전자정보인 경우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 장매체, 정보의 검색에 사용할 검색어 및 검색 대상기간 등 집행 계획

제219조 본문 중 "第109條 乃至 第112條"를 "제109조, 제109조의2,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114條(영장의 방식) ①압수・수 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압수・수색할 물건이 전 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.	제109조의2(압수·수색의 심리)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·수색영장을 발부 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수 있다.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수 있다. 第114條(영장의 방식)①
1. ~ 6. (생 략) <신 설>	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압수·수색할 물건이 전자정 보인 경우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, 정보의 검색에 사용할 검색어 및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

<u>7.</u> (생 략)

② (생략)

第219條(準用規定) 第106條, 第10 7條, <u>第109條 乃至 第112條</u>, 第 114條, 第115條第1項 本文, 第2 項,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, 제134조, 제135조, 第140條, 第1 41條, 第333條第2項, 第486條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 의 本章의 規定에 依한 押收, 搜索 또는 檢證에 準用한다. 但, 사법경찰관이 제130조, 제1 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處分 을 함에는 檢事의 指揮를 받아 야 한다.

<u>8.</u> (현행 제7호와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第219條(準用規定)
<u>제109</u> 조, 제109조의2, 제
110조부터 제112조까지